# 자율기구 "창업벤처규제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2. 3.] [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152호, 2024. 2. 3.,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재정행정담당관), 044-204-7332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자율기구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역점사업 또는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은 창업벤처혁신실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보좌한다.

③「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창업벤처규제혁신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산업창업 및 벤처기업 관련 규제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산업창업 및 벤처기업 관련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3. 신산업창업 및 벤처기업 관련 규제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신산업창업 및 벤처기업 분야 규제 조사・연구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신산업창업 및 벤처기업 관련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홍보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산업창업 및 벤처기업 관련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장관 지시사항, 장관 역점사업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4년 2월 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4년 8월 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52호,2024.2.3.>

이 훈령은 2024년 2월 3일에 시행한다.

## (별표) 창업벤처규제혁신단 공무원 정원표

(제2조제3항 관련)

| | |
|---|---|
| 총 계 | 7 |
| 일반직 계 | 7 |
| 3급 또는 4급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
| 4급 또는 5급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 1 |
| 5급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 3 |
| 6급 | |
|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 2 |